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8. 10. 23.(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보고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전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8-57(서)-47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씨엠비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57(서)-471)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별표1),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개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8-57(서)-470)

- 「방송법」 제74조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주)G1 등 5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G1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주)타임투미디어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840만원
(주)아이비스포츠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350만원
(주)서울경제티브이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500만원
(주)에스티엔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350만원

③ 보고사항

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전파법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위탁 업무를 회수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고시)」 일부개정안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